

의안번호	제 75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10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지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09월 일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
----------	----

발의연월일 : 2022년 9월 29일
발 의 자 : 박지현,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이 개정되어 근거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3조)

- “관리계획” → “종합관리계획”

나. 상위법이 개정되어 근거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3조)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

라. 조례안 예고 : 생략(「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리계획”을 “종합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 ----- ----- ---- <u>종합관리계획</u>----- ----- --.</p> <p>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3. 27., 2018. 12. 24.>
-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 3. 27.>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16. 1. 27., 2017. 1. 17., 2022. 1. 11.>
- 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